

#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우형찬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041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8월 14일

발 의 자: 우형찬 의원(1명)

찬 성 자: 김경훈, 김규남, 김길영,  
김성준, 김영철, 김인제,  
김형재, 남창진, 민병주,  
박강산, 박승진, 박영한,  
박칠성, 봉양순, 서상열,  
왕정순, 유정인, 이병도,  
이영실, 이원형, 이종태,  
임규호, 임종국, 전병주,  
정준호, 정지웅, 허 훈,  
홍국표 의원(28명)

## 1. 제안이유

- 최근 코로나 19 회복으로 인해 서울시 내 각 학교별 외부 현장교육이 빈번하고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,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, 수련활동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과 1일형 현장체험학습 추진 시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안전관리의 필요성 대두
- 이를 위해, 현장체험학습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학생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·안전대책 등의 점검을 위한 안전계획 및 사전답사 등의 조항 마련을 통해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의 기반 마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'현장체험학습 지원'에서 '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'으로 제명 수정
- 나. '사전답사'와 '현장체험학습 사전 안전교육'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(안 제2조)
- 다. 학교장의 '현장체험학습 안전계획'을 신설하여, 안전대책, 안전교육 등 점검 사항을 규정함 (안 제6조)

라. 현장체험학습의 안전한 참여를 유도하고자, 학교장의‘사전답사’와 ‘  
현장체험학습 사전 안전교육’의 조항을 신설함 (안 제8조 및 안 제9  
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8  
조의2

다. 기타 : 별도 작성내역 없음

#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2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“사전답사”란 학교현장교육 실시경로, 시설의 안전위생, 유해환경 인접 여부,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등에 대하여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체험학습 운영교사가 점검하는 행위를 말하며, 온라인을 통해 여건을 확인하는 ‘온라인답사’와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는 ‘현장답사’로 구분된다.
4. “현장체험학습 사전 안전교육”이란 학교 밖 현장교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.

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, 제6조를 제7조로 하며, 제6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(현장체험학습 안전계획) ① 학교의 장(이하 “학교장”)은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,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계획을 (이하 “안전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학생안전대책

2. 안전교육실시

3. 그 밖에 학교장이 학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학교장은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2에 따른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을 점검·확인한다.

③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을 구축하고자 학교 현장체험 학습에 대해서 심의한다.

제8조(사전답사) ①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 참가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사전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사전답사를 하는 때에는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, 이동경로 상의 교통사고 다발 지역, 현장교육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.

제9조(종전의 제7조)의 제목을 “안전교육” 에서 “현장체험학습 사전 안전교육” 으로 하며,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학교장은 교통수단 운전자 및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유사 시 비상 탈출 방법, 안전장구의 사용방법 등을 설명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</u></p> <p><b>제2조(정의)</b>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· 2. (생 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&lt;신 설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&lt;신 설&gt;</p>	<p><u>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</u></p> <p><b>제2조(정의)</b> ----- 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“사전답사”란 학교현장교육 실시경로, 시설의 안전위생, 유해환경 인접 여부,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등에 대하여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체험학습 운영교사가 점검하는 행위를 말하며, 온라인을 통해 여건을 확인하는 ‘온라인답사’와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는 ‘현장답사’로 구분된다.</u></p> <p>4. <u>“현장체험학습 사전 안전교육”이란 학교 밖 현장교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.</u></p>

<신 설>

제6조(현장체험학습 안전계획) ①

학교의 장(이하 “학교장”)은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,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계획을(이하 “안전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학생안전대책
2. 안전교육실시
3. 그 밖에 학교장이 학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학교장은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2에 따른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을 점검·확인한다.

③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을 구축하고자 학교 현장체험학습에 대해서 심의한다.

제6조 (생 략)

제7조 (현행 제6조와 같음)

<신 설>

제8조(사전답사) ① 학교장은 현장

체험학습 참가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사전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제7조(안전교육) (생 략)

<신 설>

제8조 · 제9조 (생 략)

② 사전답사를 하는 때에는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, 이동경로 상의 교통사고 다발 지역, 현장교육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.

제9조(현장체험학습 사전 안전교육)

① (현행 제7조와 같음)

② 학교장은 교통수단 운전자 및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유사 시 비상 탈출 방법, 안전장구의 사용방법 등을 설명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.

제10조 · 제11조 (현행 제8조 및 제9조와 같음)